[사 건 명] 행심 2018 - 52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1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1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Ⅰ.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인천◎◎초등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인천◎◎초등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8. 9. 17.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7시간, 출석정지 1일,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9. 19.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서,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2018. 10.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Ⅱ.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2018년 6학년이 되어 서로 다른 반이 되었지만 ◍◍◍ 학생은 2017년 조치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외에서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청구인을 볼 때마다 먼저 손가락 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발하며 모욕하였다.

나. 조치원인의 내용 대부분이 ◍◍◍ 학생의 일방적 거짓 진술과 모함이며, 학교측은 피해자 진술만을 반영하여 조치하였다.

다. 2017년 학폭위 2건 모두 청구인이 먼저 신청한 학폭위인데, ‘니애비 또 학교폭력 걸겠지’라고 청구인이 말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고, 청구인이 2018. 8. 25. 편의점 앞에서 물병을 던진 것은 ◍◍◍의 도발로 인한 것이고, 그냥 땅바닥에 던졌을 뿐이다.

라. 2018. 8. 30. 체육시간 중 이유 없이 공을 던져 몸을 맞게 했다는 신체폭력부분은 ◍◍◍ 학생 학급과의 공동 체육수업 시간에 피구게임 중 벌어진 것이며, 접촉금지 기간 중임에도 수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하였고, 두 학생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지 않아 사안이 발생하게 되었다.

마. 본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지난 2017년 학폭위 조치결과에 대한 보

복성 학폭위이며, 지난 두 건의 학폭위 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형평성에 반하는 조치이다.

바. 담당교사는 학폭위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구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린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협성 통보를 하여 청구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사.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입장이 다른 것인데, 청구인의 여러 상황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매뉴얼대로 조치하였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태도가 개탄스럽다.

아. 피청구인은 첫 번째 학폭위 결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에 대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고지하였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졸업시까지 유효'한 사항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번 조치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진술한 ◍◍◍ 학생이 청구인에게 행사했다는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목격학생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 행위를 직접 본 목격학생 진술은 없었다.

나.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접촉’의 범위는 ‘교유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는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정상적인 수업활동은 ‘교육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접촉’의 금지 범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진술서에 2018. 8. 30. 체육시간에 체육교사가 청구인을 지도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에서는 교육부 고시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기본 판단요소에 의한 판정점수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7년도 처분을 반영하여 조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라. 피청구인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 학생과 청구인 주변 학생들에게 2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목격학생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해학생 진술만 반영되고 책임교사의 주관적인 편견이 반영된 조치결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마. 자치위원회 조치 결과는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책임교사는 청구인을 배려하고자 담임선생님께 청구인과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조치를 이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구인 앞에서 협조를 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졸업시까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 학생에게 2018년 1학기 때부터 언어폭력(씨▢새▢, 씨▢, 씨▢놈, 병▢, 장애, 뭘 쪼개봐, 눈 깔아, 니 애비 애미 죽었다, 니 애비 또 학폭 걸겠지, 맞짱 까자, 졸업하기 전에 무덤으로 보낸다)을 가하였고, 2018년 1학기 체육시간 중 청구인은 ◍◍◍ 학생의 멱살을 잡았고, 같은 해 7월에는 줄넘기 줄로 때렸고, 같은 해 8월 25일에는 편의점 앞에서 물병을 던졌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체육시간 중 이유 없이 공을 던져 맞추는 등의 신체폭력을 가한 사실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 학생에게 2018년 1학기 때부터 언어폭력(씨▢새▢, 씨▢, 씨▢놈, 병▢, 장애, 뭘 쪼개봐, 눈 깔아, 니 애비 애미 죽었다, 니 애비 또 학폭 걸겠지, 맞짱 까자, 졸업하기 전에 무덤으로 보낸다)을 가하였고, 2018년 1학기 체육시간 중 멱살을 잡았고, 같은 해 7월에는 줄넘기 줄로 때렸고, 같은 해 8월 25일에는 편의점 앞에서 물병을 던졌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체육시간 중 이유 없이 공을 던져 맞추는 등의 신체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될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청구인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출석정지, 특별교육 7시간,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은 적절하다 할 것이며, 위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